

---

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**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**

**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**

-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**3. 제안이유**

- '11년 초·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과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**4. 주요내용**

- 제명을 “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조례 목적에 학교 등에 무상급식 필요경비 지원을 추가(안 제1조)
-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식품비, 급식시설·설비비에서 급식운영비까지 확대(안 제2조제2호)
-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“품질인증농산물”를 “우수관리인증 농산물”로 용어변경(안 제2조제3호다목)
- 우수식재료 품목을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(HACCP)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추가(안 제2조 제3호사목)

-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 우선 지원규정 신설(안 제4조제2항)
-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라 도지사의 급식경비 지원범위를 “일부”에서 “전부 또는 일부”로 변경(안 제5조제1항)
- 급식경비 신청절차 일원화를 위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도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신청토록 변경(안 제6조제1항)
- 위원회 심의사항 중 “학교급식 지원계획”과 “재정분담방안”을 “학교급식 등 예산지원 방안”으로 통합(안 제8조제1, 2호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 동기 및 필요성

- 2011년부터 도내 초·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학교급식의 지원 범위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주요 개정내용
  -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식품비와 급식시설·설비비뿐만 아니라 급식 운영비까지 확대
  - 우수식재료 품목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추가
  - 급식지원 대상중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신설
  - 도지사의 급식경비 지원범위를 일부에서 ‘전부 또는 일부’로 변경
  -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도 급식경비 신청시 지역교육청을 경유

-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라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그 동안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 - 다만, 제5조 1항에서 도지사의 급식경비 지원 비중을 ‘일부’에서 ‘전부 또는 일부’로 변경하는 사유 및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  - 제2조 ‘우수 식재료’에 식품위생법상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(HACCP)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추가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,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에 따라 우수식재료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만큼 ‘유전자변형 수입농산품’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‘우수 식재료’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